

電氣事故의 原因과 對策

(法院判決文을 中心으로)

(3)

金 瑾 泰

大韓電氣協會 研究委員

4. 大一빌딩 高壓電線 移設工事 感電死亡 損害賠償請求事件

가. 事件概要

1987年 4月 28日 20:40경 서울特別市 乙支路2街所在 大一빌딩 9層屋上 變電室에서 發生한 感電死亡事件으로서 大一빌딩의 6.6kV高壓線 移設工事의 都給施工業者인 삼륜전기(주)가 MOF交替를 위한 리드線 切斷作業中 6.6kV引込線 O.S 操作잘못으로 삼륜전기(주)의 雇傭電工이 感電으로 死亡함에 따른 損害賠償請求訴訟에 對하여 서울民事地方法院은 1988年 3月 8日 原告인 死亡者의 妻와 母 및 子女에게 都合 4천3백만원의 損害를 賠償하라는 判決을 내린 事件임.

나. 事件當事者

가) 原告

P: 死亡者 J의 妻, J-1, J-2: 死亡者의 子女, J-3: 死亡者의 母

나) 被告

① 大一興産(株) 代表 S: S所有인 大一빌딩에 加設된 6.6kV高壓線 移設工事를 삼륜전기(주)에 맡김.

② 삼륜전기(주) 代表 H: 電氣工事 1級資格證所持者이며 大一빌딩 6.6kV高壓線 移設工事業者

다. 判決

1988年 3月 8日 서울民事地方法院 第10部에서는 被告 삼륜전기(주)는 原告 P에게 16,875,000원, J-1에게 14,875,000원, J-2에게 10,250,000원, J-3에게 1,000,000원 및 各금원에 對하여 1987年 4月 29日부터 1988年 3月 8日까지는 年 5分, 1988年 3月 8日부터 完濟日까지는 年 2割 5分의 各比率에 의한 金원을 支給하라는 判決을 하였음.

라. 原告 및 被告의 主張內容

事件當日 삼륜전기(주)의 電工 C는 電柱에 올라가 COS를 操作하여 斷電시키고 死亡한 J는 建物 9層屋上 變電室에서 待機하고 있다가 C가 電氣를 차단시키면 電線切斷機를 利用하

여 變電機에 連結된 高壓線을 切斷기로 되어 있었는데 當日 날이 어두어 O.S의 切字, 入字 表示줄을 분간키 어려웠던 바 두줄 中 하나를 잡아당겼는데 그것이 切字줄이었다. 그래서 電氣가 차단되어 C가 COS操作에 따른 電流 차단 여부를 確認하기 위하여 變電室 屋上에 올라가 있던 삼륜전기(주) H-1로부터 電氣가 차단되었다는 信號를 받아 自身이 잡아당긴 切字줄을 電柱에 묶어 놓으려고 하다가 安全띠의 位置가 잘못되어 자세가 不安定하자 줄을 일단 손에서 놓고 安全띠를 고쳐맨후 다시 줄을 잡았는데 그줄이 入字줄인것을 切字줄로 誤認하고 잡아당겼다. 그순간 J는 切斷하고자 한 高壓線에 電氣가 흘러 感電死亡하였는데 이 事件에 대한 原告과 被告側의 主張內容을 各各 살펴보기로 한다.

原告의 主張

① 삼륜전기(주)는 C. R. J(亡人)등 電工으로 하여금 대일홍산 所有 大一빌딩 9層 變電室에서 6.6kV高壓線을 切斷하기 위하여 C는 빌딩 外線 電柱에 올라가 스위치를 끄고 大一빌딩에 불이 꺼진 것을 確認하고 J는 빌딩內 變壓室에서 高壓線의 移設作業을 하고 있던바 J는 더욱 安全을 期하기 위하여 이미 끈 스위치에 달려있는 끈을 電柱에 묶어놓으려고 무심결에 끈을 당긴 것이 入字줄을 잡아당겨 電氣가 흘러 J가 6.6kV高壓電氣에 感電되어 死亡케 한 것이니 만큼 C의 不注意에 의한 死亡임이 明白하다. 이는 삼륜전기(주)가 高壓線作業時에 해야할 作業現場에서의 철저한 감독을 하지 않으므로 發生한 것이니 被雇傭者의 過失로 인한 被害者의 損害에 대하여 當然히 雇傭主가 賠償하여야 한다.

② 大一興産은 下請業者인 삼륜전기(주)로 하여금 工事を 시킴에 있어서 内部事情을 잘 알고 있는 電氣保安擔當者로 하여금 工事現場에서 作業에 임하는 狀況을 監督하고 作業指示案内는 물론 作業에 임하기 前에 變壓器의 高壓電氣配線關係等에 대하여 事前에 充分히 알려준 후 作業에 임하게 하여야 할 義務를 태만히 하였음은 勿論이고 이 工事は 大一興産建物內의 高壓電線移設工事的 作業途中에

發生한 事件이므로 大一興産 또한 배상책임이 있다.

被告 大一興産의 主張

① 大一興産은 삼륜전기(주)의 作業에 대한 指揮 監督關係에 있지 않았고 또한 그에 대한 具體的인 指示나 監督을 한 바 없다.

② 電氣工事免許業者에게 施工契約을 하였으니 工事施工에 關與할 수 없고 安全措置도 都給業者가 하여야 한다.

③ 電氣主任이 工事직전에 高壓콘덴서를 가리키며 點檢하라고 指示하였다.

④ 現場에는 삼륜전기(주)의 營業部長 H-1이 있었고 死亡한 J나 C등이 現場代理人에게 工事施工內容에 대하여 指示를 하였다.

⑤ 大一興産(株)의 電氣主任은 通電狀態를 點檢할 義務가 없고 다만 工事竣工檢收의 責任이 있을 뿐이다.

被告 삼륜전기(주)의 主張

① 都給契約書 第3條에 依하여 指示 監督權은 엄연히 大一興産側에 있다.

② 工事着手前에 安全한 환경과 여건下에서 工事を 施工할 수 있도록 先安全措置를 取해 주어야 하고 着手後의 技能工의 不注意이거나 未熟한 作業으로 야기된 事故만이 施工業者의 責任이다. 그러므로 變電所 内部構造上 完全한 檢討가 결여된 상황에서 作業指示를 한 것이므로 大一興産의 電氣主任에게 責任이 있다.

③ 大一興産 電氣主任이 高壓콘덴서를 點檢하라고 指示하여 亡人 J는 指示한대로 點檢을 하고 그외의 指示는 없어 安心하고 工事を 着手하는 순간에 感電死亡한것이다. 왜냐하면 高壓콘덴서는 油入차단기 2次측에 있어서 잠시후에 방전이 完了되는것에 대하여는 點檢을 하였지만 유입차단기 1차측 즉 工事施工部分은 그대로 電氣가 들어와 있던것인데 이 상태를 확인하고 點檢을 해주지 않았던 것이 事故의 原因이었다.

④ 삼륜전기(주)의 영업무장 H-1은 營業外部社員으로서 技術에 대한 지식이나 責任이 없고 H가 現場責任者였는데 밤 9時에 作業을 시작할 것을 豫定하고 準備等으로 잠시會社에 왔다가 現場에 막 到着하는 순간 大一興産

電氣主任의 承認과 單獨指示에 依하여 作業을 시작하였다.

⑤ 夜間電氣工事이므로 動力, 電燈 엘리베이터 등 電氣를 꺼야만 工事を 착수할 수 있는데 大—興産측은 이런점 등에 대하여 責任을 져야 한다.

마. 法院의 判決要旨

作業이 夜間이라 C로서는 유입개폐기의 두 줄中 어느 것이 電氣를 차단시키는 줄인지의 여부를 肉眼으로 判別하기 곤란한 상황하에서 自身이 이미 잡아당겼던 줄을 일단 놓았다가 이를 다시 잡아 당겨 電柱에 묶으려다가 잘못하여 인입용 줄을 잡아당기는 경우에는 電氣가 계속 차단되어 있는 것으로 믿은채 高壓 電線를 切斷하게 된 作業원이 高壓電氣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安全띠를 고쳐 매기 위하여 이미 잡아당겼던 줄을 놓기 前에 그줄에 表示를 하여 놓거나 安全띠를 고쳐맨 후 전류유입개폐기의 줄을 다시 당겨 電柱에 묶어 놓기전에는 다시 建物內 變壓室에 있는 作業員들에게 連絡하여 電流차단 여부를 再次確認하도록 함으로써 위와같은 事故를 防止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아무런 措置를 취하지 아니한채 유입개폐기의 인입용 줄을 自身이 이미 잡아당겼던 차단용 줄로 오인하여 잡아당겨 6.6kV高壓電氣가 흐르게 됨으로써 變電室內에서 死亡한 J가 電線切斷機를 이용하여 高壓線을 切斷하려고 하는 순간 감전되어 事故가 發生한 事實을 認定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事故는 被告 삼륜전기(주)의 被傭者인 C의 業務上過失로 因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삼륜전기는 同人의 使用者로서 亡人 및 原告들이 이 事故로 因해 입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死亡한 J로서도 6.6kV高壓電線을 切斷함에 있어서는 위와같이 일단 電氣가 차단되었음을 確認하였다 하더라도 萬一의 事故에 대비하여 電線을 切斷하기 직전에 檢電器를 使用하여 電流가 흐르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感電事故에 대비해야 할 注意義務가

있음에도 電氣가 차단되었는지의 여부를 確認하기 위하여 켜둔 電燈이 消燈된후 高壓콘덴서의 방전 및 高壓計量器의 信號燈의 消燈 여부만을 確認한채 電流가 더이상 흐르지 않을 것으로 믿고 切斷作業에 임하였다가 事故를 당한 事實을 認定할 수 있는 바 當人의 이러한 過失 亦是 이 事故發生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被告삼륜전기의 責任을 免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被告삼륜전기가 배상할 손해액을 상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한편 大—興産 電氣主任은 電氣事業法에 따른 電氣工作物의 保安擔當者로서 위法에 따라 電氣工作物의 工事維持 및 運用에 關한 監督義務를 지고 있었고 電氣事業用工作物의 工事維持 및 運用에 從事하는 者는 保安擔當者의 保安을 위한 指示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電氣主任은 被告삼륜전기의 作業員들이 高壓電線移設工事의 一部인 高壓電線切斷作業을 함에 있어서 이를 監督할 義務가 있고 따라서 電氣主任으로서 切斷하고자 하는 電線에 電流가 흐르고 있는지 여부를 點檢하여 電流가 흐르지 않음이 確認된 後 作業員들로 하여금 高壓電線切斷作業에 임하도록 指示 監督할 義務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삼륜전기의 作業員이 亡人 J가 切斷하고자 한 高壓電線에 電流가 흐르고 있는지의 여부를 點檢하지 아니한채 亡人으로 하여금 高壓線切斷作業을 指示함으로써 事故가 發生하였고, 또한 이 事故는 大일홍산 所有의 建物內部에 設置된 高壓電線移設工事途中에 發生한 事件이므로 大일홍산도 亡人 및 原告들이 입은 損害를 배상할 義務가 있다고 主張하는 點을 살피건대 電氣事業法에 依하면 電氣工作物의 保安擔當者는 電氣工作物의 工事維持 및 運用에 關한 保安의 監督직무를 부담하고 電氣事業用工作物의 工事, 維持 및 運用에 종사하는 者는 保安擔當者의 保安을 위한 指示에 따라야 할 義務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電氣工事業法에는 電氣工事は 工事業者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고 工事業者는 電氣工事의 施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電氣技術者中에서 責任電氣技術者를 指定하여 工事現場

에 配置하고 이를 工事都給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電氣技術者는 電氣工事に 따른 위험 및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電氣工事を 施工 管理하여야 한다 라고 規定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대일흥산이 그가 設置한 電氣工作物에 관한 工事を 工事業者인 삼륜전기에 都給을 주어 施行한 이 事件에 있어 電氣主任이 電氣工作物의 保安擔當者 이었다는 事實만으로서 는 그가 위 電氣工事に 있어 監督者로서의 地位에 있다거나 受給人인 삼륜전기의 作業員들을 指示 監督할 注意義務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高壓電線 切斷作業 및 이에 수반하는 電流遮斷作業이 電氣主任의 指示 監督下에 이루어 졌다는 점에 關하여서는 이를 認定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事故가 大一興産의 被傭者인 電氣主任이 위 高壓線切斷作業 및 이에 수반되는 電流차단作業에 있어서는 위와같은 指示 監督義務를 태만히 함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原告들의 主張은 理由없다 할 것이며 原告들은 한국전력공사의 都給工事者의 安全守則 및 産業安全保健法 施行規則 第176條 등을 근거로 電氣主任에게 工事に 關한 指示 監督者로서의 注意義務가 있다고 主張하나 위 安全守則은 한국전력공사가 그로부터 電氣工事を 都給받은 工事業者들이 준수해야 할 守則으로 制定한 것에 不週하고 違法 施行規則 第176條는 勤勞者를 使用하는 事業者의 安全義務를 規定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原告들의 이 部分主張 역시 理由없다 할 것이며 이 事故가 대일흥산 所有建物內에서 發生한 事故라는 것만으로 大一興産이 위 亡人 및 原告들이 위 事故로 因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義務를 부담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原告들의 피고 大一興産에 대한 請求는 나머지 點에 關하여 判斷할 必要없이 理由없다 할 것이다.

바. 損害賠償請求額과 判決結果 對備

原告請求額	判決額
被告等은 各自	삼륜전기(주)는
P에게 21,996,284원	P에게 16,875,000원
J-1에게 21,996,284원	J-1에게 14,875,000원
J-2에게 14,330,856원	J-2에게 10,250,000원

J-3에게 1,000,000원	J-3에게 1,000,000원을 支給하고 大一興産에 대한 請求는 기각한다.
------------------	--

5. 日新紡織火災로 因한 電氣保安擔當者 解任無效確認 請求事件

가. 事件概要

1983年 12月 7日 14:20경 光州市 西區所在 日新紡織(株) 光州工場에서 發生한 火災事件으로서 原告인 日新紡織(株) 電氣保安擔當者가 被告인 日新紡織(株) 代表理事를 相對로 解任無效確認請求訴訟을 提起하였던 바 서울 民事地方法院은 1988年 2月 23日에 “火災가 후레임크리너를 連絡하는 支線의 接續不良이라든가 其他 電氣異常으로 發生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火災가 工場天井에서 發生하였다는 事實만 가지고는 原告의 業務上 過失로 因한 火災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여 被告가 原告에 對하여 取한 解任은 無效임을 確認한다 라고 判示한 事件임.

나. 事件當事者

- 가) 原告 A: 日新紡織(株) 光州工場 電氣保安擔當者
- 나) 被告 K: 日新紡織(株) 代表理事

다. 被告의 主張

第2工場 A정방실 15호기 위의 天井속을 지나는 幹線과 후레임크리너(먼지 除去機)에 連結되는 支線과의 不良接續部分에서 생긴 發熱로 因해 부근에 쌓여있던 먼지에 發火되어 發生한 火災이고 가사 위와 같이 發火點을 特定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火災發生場所가 工場天井內部인 점으로 미루어 天井위 어느 곳인가에서 電氣配線 接續不良 또는 누전으로 因하여 發生한 火災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保安擔當者인 原告는 平素 電氣施設物의 絶연상태의 點檢 및 補修 등 그 維持 運營에 關한 監督義務를 게을리한 業務上의 過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被告會社가 原告를 취업규칙

第49條第4項所定の“業務上過失로 會社에 重大한 損害를 招來한 者”에 該當한다고 認定하여 原告를 징계 해고한 것은 正當하다.

라. 解雇經緯

1983年 12月 20日 日新紡織(株)가 原告를 징계해고한 經緯를 보면 保安擔當者인 原告에게 火災發生原因이 電氣施設物上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內容의 始末書를 쓰도록 要求했으나 原告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被告會社의 理事 4人과 監査 1人으로 構成된 火災事故原因調査特別委員會를 구성하여 始末書가 處罰을 위한 것이 아니고 保險金을 쉽게 타기위한 것이며 社長에게 報告하여 調査를 完決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유하는 바람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火災發生可能性이 가장 큰 燈器具의 老朽로 인한 絶緣과괴로 判斷된다는 內容의 始末書를 쓰게 된 것이고 特別委員會는 1983年 12月 20日 위 火災發生原因을 電氣전문으로 結論 짓고 電氣保安擔當者인 原告를 징계해고 할 것을 議決하게 된 것이다.

마. 警察 및 治安本部의 수사 초점

最初로 불길의 목격된 지점인 A정방실 第15號機 東便 환풍기 附近 天井위에 設置된 후레임크리너를 注目하고 후레임크리너를 連結하는 支線과 動力幹線과의 接續部分의 接續不良으로 인한 發熱이 火災發生의 原因이 된 것이며 후레임크리너는 原告의 監督下에 1978年 9월에 設置한 것인데 A정방실 天井위에 配線되어 있는 정방기용 440V 200m/m線을 使用하였고 이를 引込하기 위하여 위 動力線의 PVC 絶緣피복 外部를 벗겨내고 그 벗겨진 部分의 na동선에 8m/m의 支線을 감아 接續한 다음 그 支線中間에 變壓器를 設置하여 電力을 降壓하고 그 降壓된 電流가 흐르는 支線 끝 部分에 220V 12A用 후레임크리너를 設置한 事實.

火災現場을 調査한 治安本部 감식課에서는 1983年 12月末日경 위 火災發生原因을 위 動力幹線과 후레임크리너用 支線과의 接續不良으로 인한 發熱 發火로 結論짓고 그러한 結

論을 도출하게 된 根據로 440V 200m/m 動力線에서 정방기 모터用으로 分岐된 支線은 正常狀態로 分岐되었으나 후레임크리너用 8m/m支線의 分岐는 2내지 3회만을 接續한 不良結線이고 440V 200m/m動力線으로부터 8m/m 굵기의 支線이 分岐되어 그 支線에 220V 12A의 電流가 흐르게 될 경우 그 使用負荷가 過多하게 되어 不良接續으로 인한 發熱은 必然的이며 먼분진이 多量 쌓이고 있는 工場의 特性으로 볼때 위 發熱로 因하여 먼분진에 引火되어 火災가 發生할 可能性이 充分하다고 봄.

바. 法院의 判決要旨

그런데 事實은 8m/m支線의 接續部分에는 220V 12A의 電流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440V 6A의 電流가 흐르며 위 電流가 變壓器에 의하여 降壓되어 비로소 220V 12A의 電流가 후레임크리너에 흐르게 되므로 위 接續部分의 8m/m支線에 220V 12A의 電流가 흐르는 것을 前提로 하여 使用負荷가 過多하다는 內容의 治安本部의 火災鑑識은 그 前提가 잘못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8m/m支線에는 440V 61A까지의 電流가 흐를 수 있으므로 위 火災鑑識대로 2내지 3회만 接續한다고 하더라도 그 負荷가 극히 적고 電線의 굵기가 充足하여 發熱이 생기는 것은 극히 想定하기 어려운 事實, 뿐만아니라 후레임크리너 設置當時 電氣擔當者들은 위 動力幹線의 絶緣피복을 5cm가량 벗겨내고 그 자리에 支線을 5내지 6회 接續한 다음 그 주위를 리노테입으로 감고 다시 비닐테입으로 감아 絶緣하였기 때문에 위 후레임크리너 設置以後 火災時까지 每年 1回實施한 絶緣측정시 후레임크리너의 絶緣상태는 항상 無限大로 측정되어 最適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檢察에서의 사진관정에서도 위 支線이 5내지 6회 接續된 것으로 確認된 事實. 또한 위 動力幹線에 대하여 每年實施한 絶緣측정 결과는 1979年度에는 50메가오옴, 1981年度에는 30메가오옴, 1982年度에는 20메가오옴, 1983年 7月 24日에는 5내지 6메가오옴으로 그 수치가 점차 減少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1메가오옴 이상이면 正常狀態라고 볼 수 있는 事實, 그밖에 天井內에 있는 전등회로는 配管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火災發見位置와 相當한 거리가 있어 治安本部의 火災鑑識에서도 위 전등회로에서의 火災發生可能性을 배제하였던 事實 등 위와같은 여러사정을 綜合하여 이火災事件을 最終 수사한 檢察에서는 電氣의 異常으로 인하여 發生한 火災라고 보기 어렵다고 判定하여 1984年 5月 29日 原告에게 業務上失火에 대하여 무혐의 決定을 한 事實 등을 認定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事件火災가 후레임 크리너를 連結하는 支線의 접속不良이라든가 其他電氣의 異常으로 인하여 發生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火災가 工場天井에서 發生하였다는 事實만으로는 電氣의 異常으로 因해 發生한 火災라고 추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이 事件火災가 電氣의 異常으로 인한 火災라거나 原告의 어떤 業務上 過失로 인하여 發生한 火災라고 볼만한 아무런 資料가 없으므로 被告會社가 原告에 대하여 한 위 징계해고는 被告會社가 이를 有效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여부 및 被告會社의 歸責事由의 有無를 不問하고 勤勞基準法 第27條 第1項所定の 正當한 理由 없이 行하여진 解雇에 該當하여 無效라고 할 것이다.

또한 被告會社의 人事規定에 依하면 人事管理委員會를 두고 있는데 構成員을 보면 副社長을 委員長으로 各理事와 總務部長을 委員으로 總務課長을 幹事로 두게 되어 있으며 原告 등 7級以上の 社員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게 되어있음에도 不拘하고 이 事件 調査만을 目的으로 임시 구성된 特別調査委員會의 징계해고는 징계權없는 기관이 한 징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 역시 問題가 있다.

賃金請求部分에 관하여 보면 原告에 대한 解雇가 無效이므로 原告는 여전히 被告會社의 社員으로서의 身分을 갖게되는 것이므로 不當解雇以後부터 복직될 때 까지의 賃金を 支給받을 權利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 原告의 請求趣旨와 判決主文 對比

請求趣旨	全文
① 解雇無效確認	① 解雇無效를 確認한다.

② 1983年 12月 20日부터 原告복직할 때까지 每月 金 1,073,333원의 比率에 依한 金원 支給	② 原告에게 金 35,257,074원 및 1988年 1月 1日부터 복직 時까지 每月 935,126원 比率의 金원 支給하라.
③ 訴訟費用被告負擔	③ 訴訟費用을 7等分하여 그 6은 被告負擔
④ 假執行	④ ②項은 假執行할 수 있다.

6. 電工 S의 感電負傷 損害賠償 請求訴訟

가. 事件概要

1972年 2月 27日 09:10경 서울市 永登浦區 溫水洞 所在 機械工團內에 設置된 22.9kV-Y 오류幹線 94우 좌 2號線 修理都給工事中 電工 S가 自家發電 需用家로부터 逆流된 電流에 感電되어 負傷한 事件임.

나. 判決主文

自家發電 需用家로부터 逆流하는 電流가 있을지도 모르므로 C·O·S를 開放하여 逆流電流를 막아줄 責任을 다하지 못한 過失로 因한 損害賠償責任이 있다(1975年 3月 11日 大法院判決).

다. 判決理由要旨

本件 工事を 하기 위하여는 오류간 27號線의 連結스위치를 開放하여 送電되어 오는 電流를 차단해야 함은 물론이고 위 27호線과 오류간선 94호線 사이에는 一般需用家에 連結되는 電線이 있어 위 電流차단中 自家發電 需用家로부터 逆流하는 電流가 있을지도 모르므로 위 94號線에 設置되어 있는 C·O·S를 開放하여 逆流電流를 막아야 하고 本件 工事中 電流를 차단해 줄 責任이 있는 被告會社의 現場監督인 訴外 H로서는 이와같은 짧은 時間內에 電流가 모두 차단된것을 確認하고 作業員으로 하여금 作業에 종사토록 하기 위하여 事前에 면밀한 計劃을 세우고 또한 이를 作業員들에게 주지

시켜 本件 工事前 태성전업의 現場所長인 訴外 J와의 사이에 本件 工事當日 09:00경 위 27호線에서 만나 連結스위치를 함께 開放하기로 한 約束單을 하였으며 위 約束에 따라 工事當日 아침 위 連結스위치를 開放한 後에야 J에게 위 94號線에 가서 그곳에 設置된 C·O·S를 開放하고 그리고 現場에 가서 집지를 잡고 作業하라는 거의 實現하기 어려운 指示만 내린 事實등 認定事實에 依하면 本件事故는 H. J. 그리고 위 原告의 過失이 競合하여 發生하였다 할것이므로 H의 使用者인 被告會社로서 H의 不法行爲로 인하여 發生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7. 休電作業中 送電으로 感電負傷 損害賠償 請求訴訟

가. 事件概要

1970年 10月 11日 16:17경 江原道 양양군 양양면 구교리에 있는 電柱1本을 交替作業中 都給業者인 동광전업사 所屬電工 K가 休電作業으로 잠바를 連結하던 中 양양출장소 職원이 送電措置를 取하는 바람에 感電負傷한 事件임.

나. 判決主文

休電作業中 送電措置로 感電負傷한 被害者에 대한 賠償責任이 있다(1972年 1月 20日 서울高法判決)

다. 判決理由要旨

原告 K는 江原道 東草市 동명동所在 동광전업사의 外線電工으로서, 동광전업사는 被告 산하 江陵支社 東草營業所 양양출장소장으로 부터 양양군 양양면 구교리에 있는 韓電배전 第25號 電柱 1本の 交替工事を 都給받아 原告 K로 하여금 그 工事を 하게 되어 同人은 그곳에서부터 約 500m 떨어진 위 出張所 職원과 事전에 1970年 10月 11日 16時부터 10分間 위 工事を 위한 斷電措置를 하기로 하고 그 工事 終了通知를 받은 후에 送電하기로 約束이 되었으나 그날 16時 2分부터 工事を 시작하여

電柱上的 切斷된 잠바線의 連結作業中 時間이 遲延되어 그날 16時 17分경 같은 出張所 配電電工으로 있는 訴外 H가 電氣需用家로부터 送電독촉을 받고 위 工事的 終了여부를 確認하지 아니한채 위 出張所 事務室에 있는 3.3kV 高壓리크로자에 부착된 조작봉(스위치)을 올려서 送電措置한 過失로 위 高壓電流가 工事中 이던 위 電柱線에 흘러 原告 K로 하여금 그 高壓電流에 感電되어 重傷을 입게한 事實을 認定할 수 있고 달리 反證이 없으므로 위 事故는 被告산하 위 出張所 職원이 送電措置를 함에 있어 위 作業終了 여부를 確認한 後에 하였어야 할 業務上 注意를 태만히한 過失로 因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被告는 本件事故로 因하여 입은 原告의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할 것이다.

8. 柱上變壓器 投入中 캐치 送電으로 感電負傷 損害賠償 請求訴訟

가. 事件概要

1971年 4月 30日 18:00경 慶尙南道 蔚山市 성암동 신수部落 高壓線 加設工事現場에서 電工 K가 柱上變壓器 캐치를 投入하다 그순간 送電된 3.3kV 高壓電流에 感電負傷한 事件임.

나. 判決主文

休電作業中 送電으로 因하여 負傷한 損害에 대하여 被告는 이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다. 判決理由要旨

被告산하 釜山支店 蔚山營業所 補修係 職員인 訴外 H는 1974年 4月 30日 삼성전기 資會社가 被告會社로부터 都給받은 울산시 성암동 신수부락 高壓線 加設공사의 現場에서 그 工事進行關係 및 送電關係를 감독하고 있던 中 위 工業現場에서 캐치를 달으라는 作業 指示를 하여 原告 K 및 訴外 R이 각 캐치 1 개씩을 들고 위 같은 洞事務所 앞 所在 높이 11m의 변대주에 乘柱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高壓線 送電業務에 從事

하는 위 H로서는 사람의 生命에 위협을 주는 3.3kV 高壓電線에 加壓送電作業을 위하여 送電所에 가기 전에 캐치 投入作業을 마치는 것을 確認한 후에 그 現場을 떠나 送電所로 가서 送電措置를 취하여야 할 業務上 注意義務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위 原告 등이 캐치投入作業을 위하여 승주하고 있을 때 위 現場을 떠나 택시로 그곳에서 1.5km 떨어진 送電所에 이르러 위 캐치投入作業이 끝났으리라고 가볍게 믿고 送電措置를 한 탓으로 때마침 캐치投入作業中의 진동으로 떨어진 C·O·S 휴즈봉을 原狀態로 끼워두기 위하여 C·O·S 퓨즈를 손으로 집어넣고 있던 原告로 하여금 3,300V電氣에 감전되어 땅에 떨어지게 하여 原告에게 우전박 절단 및 좌수기능 完全 상실의 重傷을 입힌 事實등 原告는 被告會社 所屬직 원인 H의 不法行爲로 인한 被告會社 使用者 責任을 구하는 것이므로 被告는 被傭者인 H의 業務上過失로 인하여 입은 原告의 損害를 賠償할 義務가 있다고 할 것이다.

第 4 章 綜合分析

本論에 記述한 電氣火災事件과 感電死傷事故에 대한 法院의 判例를 中心으로 그 原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16〉 事故發生 原因

事故件名	發生原因	判決要旨
○ 大旺코너 火災事件	電氣로 因한 原因이 아님	無罪
○ 獨立記念館 火災事件	電氣機器의 잘못 使用	有罪
○ 진달래Apt 感電 負傷 事件	電氣設備에 無斷侵入 感電負傷	部分 有罪
○ 大一빌딩 感電事故	機器의 誤操作	有罪
○ 日新紡織 火災事件	電氣로 因한 原因이 아님	無罪
○ 電工S의 感電負傷事件	作業管理 不良	有罪
○ 休電作業中 感電 負傷事件	〃	〃
○ 柱上變壓器 作業中 感電負傷事故	〃	〃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電氣火災事件은 2件이 電氣火災가 아니어서 無罪가 되었고 1件은 電氣機器의 操作잘못으로 火災가 發生하였다.

感電事故는 1件이 電氣設備에 外部人이 無斷侵入하여 感電한 事件이고 1件은 機器操作 잘못이었으며 其他 3件은 作業管理不良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하여 問題點을 綜合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1. 電氣火災

電氣火災事件에 대하여 大旺코너와 日新紡織火災事件은 그 原因이 電氣가 아니기 때문에 結論에서 綜合的으로 다루어 보기로 하고 獨立記念館火災事件에 대하여 分析하여 보기로 한다.

이 事件은 1986年 8月 15日 開館을 앞두고 發生하여 世間의 耳目을 集中시킨 大型火災事件이었다.

原因을 살펴보면 一個 電工이 저지른 어처 구니 없는 事件이었고 또 當事者들의 勤務怠慢도 큰 原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獨立記念館建物(本館)은 높이가 45m(15층 높이)로 홀의 天井을 鐵網(Lath)으로 해서 지붕 밑 內裝마감이 보이는 構造이다. 層의 구별이 없고 東, 西 양쪽에 研究棟과 管理棟이 위치하고 있는 延建坪 3천 6백 50坪의 맞배 形式의 石造韓式建物로 기와대신 銅板을 사용해 지붕을 덮었다.

電氣工事は 84年 9月 25日 98%의 진척을 보여 거의 完工段階에 있었다.

發火場所인 지붕 밑은 기와대용의 銅板 밑에 斷熱材인 우레탄, 그 밑으로는 아스팔트 투핑, 판재, 角木材, 그리고 서까래인 鐵材 I-Beam 으로 構成되었고 I-Beam서까래 밑으로는 Angle-Iron과 Channel-Bar로 열개를 만들고 FRP로 둘러 마감하여 밑에서 볼때 韓式構造物의 서까래 모양을 낸 構造物이었다. 장식서 까래중 6개의 主기둥이 서있는 곳마다에는 여러개의 電球를 連結한 照明臺를 설치해 間接照明(밑에서 사람이 電球를 直接 볼 수는

없고天井에서反射되어 내려오는 빛만을 볼 수 있다)을使用하였다.竣工단계에서는天井라아스를 통해 지붕마감이 보이는 것이 깨끗하지 못하다하여 I-Beam 서까래 밑에 설치된間接照明 構造物間의 내장 서까래 사이에 폴리에틸렌어망도 쳐놓았다.

獨立記念館 供給電源은 380V/220V(3相 4線式)뿐이나 本館의 間接照明만은 降壓器를 설치하여 單相 380V를 110V로 降壓시켜 使用토록 設計되어 있어 降壓器를 發注 製作中에 있었다.

86年 7月 24日 15時頃 現代電業所屬 電工 J가 分電盤內 配線이 허술하다 하여 配線을 정리하면서 降壓器없는 狀態의 110V用 間接照明 配線을 380V Breaker 端子에 直結시켜 놓아둔 것이다.

그 이후 間接照明回路는 한번도 使用된 일이 없었으나 86年 8月 4日 21時 40分경 같은會社 電工인 K와 B가 照明을 끄고 退勤하는 과정에서 경비원들의 點燈要求로 點燈하기 위하여 間接照明用 Breaker(前에 電工J가 110V用電球回路에 380V Breaker를 直結시켜 놓아둔 狀態)를 投入시킴으로써 지붕밑 電熱性FRP에 裝置된 110V用 間接照明裝置가 發火原因이 된 것이다. 이 間接照明裝置의 구조를 보면 한 열개의 길이는 15m로 Angle-Iron과 Channel-Bar로 構成되어 있고 外裝을 FRP로 둘러싼 장식용 서까래 형태로 양측면으로 110V用 10W電球 140個씩이 장치되어 分電盤의 1개 Breaker로 電球 140個가 操作되는 것이다. 設計上으로는 10W電球 112個에 110V電壓을 使用토록 되어 있었으나 380V電壓을 印加하여 電球의 金具와 소켓트金具間 접속부에서 Flash-over가 일어나 通常 2000℃가 넘는 高熱이 可燃性 FRP에 着火케 된 것이다.

結果的으로 發火原因은 末端電工의 無知와 監督소홀로 歸着된다고 보아야 겠다.

2. 感電死傷事故

가. 진달래아파트 感電負傷事故

電氣擔當職員이 아닌 女職員이 無人變電所

에 無斷으로 들어와 配電盤 Cubicle에 몸을 숨기려다 感電된 事件으로서 技術的으로 보나 電氣施設面이나 아무異常이 없고 다만 外部人 出入統制面에서 施錠裝置가 안된 것이 問題點이라 볼 수 있다.

나. 大-빌딩 高壓電線移設工事 感電死亡事故

大-빌딩은 電氣設備容量 275kVA인 自家用 電氣設備 設置業體로서 빌딩으로부터 約 30m떨어진 韓電콘크리트 電柱에 設置된 GOS로부터 引込用 케이블을 切下埋設하여 6.6kW의 電壓을 受電하고 있는 設備로서 서울市の 下水口 補修工事關係로 假埋設된 引込用 地下케이블을 移設하기 위해 電氣工事業者인 S전기에 工事を 發注하여 施工케 하였다.

이 工事は 引込用케이블 移設工事로서 부득이 빌딩에서 約 30m 떨어진 韓電콘크리트 電柱위에 있는 G.O.S를 開放시켜야 하므로 G.O.S를 開放시키는 作業組와 變電室에서 MOF 1차측 電線을 切斷하는 作業組로 分離하여 作業을 實施하게 되었다.

變電室內에서 대기중인 作業組는 建物屋上에서 G.O.S開放여부를 中繼하는 作業組의 開放確認通報를 받은후 停電이 된 것을 확인하고 作業에 臨하였는데 電線을 切斷하는 순간 6.6kW의 高壓에 感電하여 死亡케 되었다.

그 原因은 다음과 같다.

G.O.S조작자가 스위치를 開放했을때 連絡을 받고 變電室에서 대기중인 作業組가 作業中에 死亡한 것은 停電이 된후 檢電器로 確認하지 않고 케이블 切斷作業에 臨하였으며 또한 G.O.S조작자는 스위치를 開放시킨후 開路用끈을 붙잡아 매어 固定시킬때 錯覺하여 投入用끈을 붙잡아 맴으로서 G.O.S가 通電狀態가 되어 變電室에서 切斷作業을 하던 作業者가 6.6kW 高壓에 感電하여 死亡케 된 것이다.

다음 電工S의 感電負傷事故, 休電作業中 送電으로 感電負傷事故, 柱上變壓器 作業中 送電으로 感電負傷事故等은 그 原因이 모두 基本的인 作業管理不充分에 있다고 보아진다.

(다음 호에 계속)